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1일에서 2022년 12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28일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근로형태가 열악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사무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고용노동부령 제17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0년 12월 11일”을 “2022년 12월 1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2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28일”을 “2022년 1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항제10호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⑨ (생략) ⑩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 설></u> 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홍보기획팀장 및 고객지원팀장은 <u>2020년 12월 1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고용노동부령 제22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217호 고용노동부와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u> 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u>2022년 12월 11일까지</u> -----. ②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령 제22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간) ----- -----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1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2022년
12월 28일까지-----